

세무학회지
제7권 제3호 2006년 9월 pp.297~333
한국세무학회

금융·자본소득세제의 중장기 개편방안*

오 윤** · 박 훈*** · 최원석****

<요 약>

본 연구는 소득에 대한 우리세제를 조망하면서 금융자산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문제점을 도출하여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해 공평성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현행 단일세율의 원천징수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과세상 공평이라는 관점에 소홀한 면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현행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 합산기준금액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조세부담기능이 떨어진다. 또한 저소득층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4%(주민세 포함 15.4%)의 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부담이 역진적으로 되고 있다. 둘째, 금융자산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소득과세에 있어 수평적 공평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유가증권양도차익이나 파생금융상품소득과 같이 비과세하는 부분이 문제이다.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금융자산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2,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고액의 금융자산가에게 적절한 조세부담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준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자에게는 종합합산을 선택하도록 하여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비교과세제도를 폐지한다. 둘째, 유가증권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과세하도록 한다. 유가증권양도차손은 일정 기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양도차익과 합산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파생금융상품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이는 복합적인 파생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세제개편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먼저, 이자 및 배당의 합산과세기준을 하향조정하면서 비교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선택과세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유가증권양도차손의 및 파생금융상품손익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과세한다. 다음, 이자, 배당, 유가증권양도차손의 및 파생금융상품손익을 포괄하는 금융자산소득개념을 도입하여 합산과세 한다. 금융자산소득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합산과세 하고, 기준금액 이하인 자는 선택합산 한다. 마지막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통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영구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세제의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부의 무상이전을 소득의 실현시기로 보는 방안을 도입한다.

<주제어> 금융소득, 자본소득, 종합과세, 유가증권, 파생금융상품

* 본 연구는 2006.4.1 한국세무학회의 2006년도 조세개혁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조교수, ohyoan@uos.ac.kr, 02-2210-5706, 016-837-7948, 공동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조교수, phn@uos.ac.kr, 02-2210-5653, 016-251-5502, 공동저자

**** 세무학과 조교수, wschoi@uos.ac.kr, 02-2210-5665, 011-240-7236, 공동저자

논문접수일 : 2006년 8월

게재확정일 : 2006년 9월

I. 서 설

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서부터 기존의 개념을 뒤바꾸는 대폭적인 세제개편안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어떠한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소득인지를 해석론상 결론짓는 것에서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상 취급의 차이(손금산입여부), 양 소득에 대한 구별의 어려움 때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괄하는 소득개념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전통적인 세제를 크게 뒤바꾸는 방안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 가운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하라는 실무적이면서도 다소 이론적인 주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먼저 구체적인 쟁점을 다루기 전에 금융자산소득과세에 대한 세계적 동향 및 우리나라의 과세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현황

1. 개념 설정

우리 정부는 중장기세제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세제개편과 아울러 전문직 등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세원 적출을 위해 행정력 제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은 보다 더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활동에 대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낮추고 있다.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직접세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사조도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다.

현재의 우리의 조세부담을 수준을 보면 OECD 국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¹⁾ 따라서 양극화해소 재원마련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원을 확충하여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세원을 확충하는 데에는 세율을 인상하는 것과 같이 법을 개정하는 방법과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행정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담능력에 맞는 조세부담을 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가 발표한 실

1)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GDP 대비 조세부담율은 2004년 현재 19.5%이다. 그리고 2002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율(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은 24.4%이고, 2003년(잠정)은 25.5%이다. 한편 2004년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조세수입)/(GDP)의 비율은 2002년 28%(잠정)이다. 2001년 OECD국가 전체의 비율은 36.9%이다. 이는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한 수치이다. 역시 같은 해 OECD가 발표한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GDP)의 비율에 있어서는 2002년 우리나라가 7.1%(잠정)이고, 2001년 OECD 국가평균은 13.4%이다.

효세율 수준을 보면 근로소득은 12%, 사업소득은 16%, 이자와 배당은 각각 11% 수준이다. 그리고 유가증권양도차익은 상당 부분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소득종류 간 과세상의 불공평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그러한 부문 중의 하나가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과세라 할 것이다.

우리세법에서 금융소득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경우 금융소득은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금융소득보다 넓은 의미의 금융자산소득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을 금융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경제적 가치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자와 배당 뿐 아니라 자본이득(capital gains)도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인 금융자산은 자본출자적인 성격이 있는 권리 또는 증서, 자금대여적인 성격이 있는 권리 또는 증서 뿐 아니라 금전 또는 금전등가적인 모든 지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보고자 한다. 이는 자본소득(capital income)에 근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 과세 현황

가. 소득과세현황²⁾

(1) 과세대상

소득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창출한 부가가치와 부의 순증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집계에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가 대체로 국민소득의 10% 내지 30% 수준³⁾으로 추산되기는 하지만,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각 부분에 대한 소득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문별 과세현황을 검토해 보는 것은 우리의 소득과세를 진단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에 더하여 부의 변동추이를 파악하고 그의 순증분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 그리고 이를 국민소득에 대한 과세와 비교한다면 Haig-Simons 관점에서 소득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 추세분석의 대상기간을 97년 이후로 설정한 것은 우선 통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자료입수가 가능한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97년에 우리 경제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어 그 이전과 이후는 이질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1997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일겠지만, 세계가 그간 경제변화에 중립적이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가급적 이상치를 제거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하 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오 윤·박 훈·최원석, “금융소득 및 자본소득 세제개편방안”, 2006년 조세개혁 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세무학회, 2006. 4.1, pp.239-243 참조.

3) 현금수요함수접근법에 의한 추산이다(배민근, 우리나라 지하경제 줄고 있다, LG주간경제, 2005.12.28). 전태영과 변용환(2005)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약 28.5%로 추산된다. 최근 유일호 교수의 ‘탈세와 세무행정(2006, 조세연구원)’에 의하면 1996년에 약 12%로 추산된 바 있다.

(가) 국민소득의 추이⁴⁾

국민순가처분소득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간접세,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가 주된 구성요소가 된다. 순가처분소득에는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피용자보수는 근로에 따른 소득, 영업잉여는 생산 즉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로서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 중 피용자보수를 제외한 이자, 임대료 등과 잔여이윤인 배당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아래 <표 1>에서는 국민소득계정상 영업잉여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민간부문의 영업잉여를 분리하여 표기하였다.

<표 1> 국민소득 추이(조원)

	1997(A)	2004(B)	(B-A)/A	97~04
피용자보수	226.6	342.1	51%	2,146.4
영업잉여(민간부문)	131.6	228.4	74%	1,383.9
기타	64.9	102.1	57%	659.2
순가처분소득	423.1	672.6	59%	4,189.5

우리나라의 경상국민순가처분소득은 1997년 423조원에서 2004년에는 672조원으로 59% 가량 증가하였다. 과세대상이라 할 수 있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민간보수)도 전체적으로 59% 가량 증가하였다.

(나) 부의 증가

통계청은 매 10년마다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국부통계를 발표한다. 가장 최근 것으로서는 1997년 자료로서 상당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최근 과세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국부통계는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있어 국부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과세대상으로서의 자산은 토지, 주택, 상업용건물, 주식(상장, KOSDAQ), 금융저축 등이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각 자산군별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 가치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용변수를 활용하여 총가치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한 위 6개 부문의 총자산가치는 1997년말 2,600조원에서 2005년말에는 5,201조원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4) 이하 통계는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통계에 따른다.

〈표 2〉 국부 추이(조원)

	대용변수	자료출처	1997(A)	2004	2005(B)	(B-A)/A
토지	공시지가	건교부	1,291	1,829	2,176	68.5%
주택	가격지수, 주택수	통계청, 건교부	305	455	486	59.3%
상업용건물	재산세과표로 추산	재경부	129	192	205	58.9%
상장주식	재정금융통계 수치	재경부	70	412	655	835.7%
KOSDAQ	(상동)	(상동)	7	31	70	900%
금융저축	(상동)	(상동)	798	1640	1,609	101.6%
계			2,600	4,559	5,201	100%

(2) 대상별 소득과세 현황

(가) 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는 거의 대부분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되므로 국민소득계정상 피용자보수를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하면 근로를 원천으로 하는 소득이 어느 정도 과세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표 3〉 피용자보수 과세현황(조원)

	1997(A)	2004(B)	(B-A)/A	97~04
갑근원천징수	5.5	10.29	87.1%	57.49
갑근지급신고액	148	249	68.2%	1,471
퇴직원천징수	0.15	0.34	126.6%	2.29
퇴직지급신고액	8.57	16.33	90.5%	128.38
피용자보수과세노출율	69%	78%		75%
피용자보수실효세율	2.5%	3.1%		2.8%

피용자보수로서 지급받는 것으로 과세당국에 신고한 금액과 국민소득계정상 피용자보수를 비교하면 1997년 69% 신고 되던 것이 2004년에는 78% 신고 되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자들의 세원노출율⁵⁾이 많이 향상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부 중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피용자보수 중 소득세로 지출되는 금액의 비중은 1997년 2.5%에서 2004년에는 3.1%로 소폭 증가하였다. 전체 근로소득자들의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일반적인 공제액 수준인 15백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노동자들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5) 본 연구에서는 “국민소득통계로 잡히는 소득에서 세법에 의하여 과세소득으로 분류되고 실제 신고된 지급액(근로수입금액)의 비중”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나) 영업잉여

영업잉여는 개인형태의 사업이든 법인형태의 사업이든 해당 사업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서 피용자보수를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업잉여는 개인의 종합소득신고나 법인의 법인세신고에서 결정소득금액보다는 더 큰 개념이다. 국민소득계정상 영업잉여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체의 소득으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 영업잉여는 비용으로 지출될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지만 인건비는 차감한 후의 개념이다. 따라서 결정소득금액에 인건비를 제외한 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을 가산하여 영업잉여와 비교해야 한다. 그런데 비용들 중 다른 사업체에게 지급된 것들은 전체 영업잉여 계산에 포함되므로 비사업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용만 가산해야 한다. 이것으로는 비사업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이를 전체 결정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영업잉여는 자본이득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그런데 법인실현자본이득이 법인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인결정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비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조정된 법인결정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의 징수실적을 영업잉여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영업잉여에 대해 추산한다.

〈표 4〉 영업잉여 과세현황(조원)

	1997(A)	2004(B)	(B-A)/A	97~04
종합소득징수액	5.0	8.3	65.6%	44.69
종합소득결정금액	26.3	48.4	84.0%	276.8
법인세징수액	9.4	24.7	161.8%	133.9
법인소득결정금액	33.3	124.4	273.4%	611.5
영업잉여과세노출율	64%	72%		74%
영업잉여실효세율	12.8%	14.3%		23.2%
개인사업실효세율	12.2%	12.4%		11.9%
법인사업실효세율	24.4%	21.3%		23.2%

영업잉여의 과세노출율⁶⁾은 1997년의 64%에서 2004년에는 72%로 향상되었다. 8년 평균 74%로 피용자보수의 75%와 거의 같다. 이 수치만을 보면 근로소득자나 사업자나 자신에게 귀속하는 소득을 결과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과세에 노출시키게 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의 존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지하경제의 규모를 어렵잡아 국민소득의 20% 수준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 영업잉여로 집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영업잉여의 과세노출율은 50% 전후로 낮아질 것이다.

한편 실효세율 측면에서는 개인사업은 11.9%,⁷⁾ 법인사업은 배당소득세액까지 가산할 경우 23.2%가 되어 근로소득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2004

6) 과세노출율은 국민소득으로 집계된 것 중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분류되고 실제 신고된 소득금액을 말한다.

7) 정부는 (부담세액)/(신고소득)을 기준으로 16% 정도로 추산하지만, 여기서는 '신고소득' 대신 '(신고소득)/(과세노출율)'을 대입하여 추산한 수치이다.

년 과세미달자의 비율이 47.5%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만의 부담 수준은 11.9%보다는 어느 정도 높을 것이다.

(다) 자본이득⁸⁾

자산의 가치순증분은 국민소득통계에 반영되지 않지만 Haig-Simons의 개념에 의할 때⁹⁾ 소득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 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순증분과 그에 대응하는 조세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에는 자산의 귀속주체는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법인, 정부비영리부문으로 다양하다는 것, 가치순증분에는 미실현 되어 원천적으로 과세대상으로 노출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비영리부문의 귀속분은 97년 국부통계¹⁰⁾에서의 비율을 적용하여 차감해 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법인귀속자본이득¹¹⁾은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개인에 귀착될 자본이득을 개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실적과 비교한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실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양하다. 주식은 1년에도 몇 번 회전되는 반면,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유기간이 10여년 정도 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실현이득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자본이득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미실현이득을 포함하는 것에 따른 논리적 흠결은 자본이득 누적액과 누적과세액을 비교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¹²⁾ 마지막으로 전체 자산가치의 증가분 중 국민소득에서 저축으로 처분된 금액은 차감하였다.

〈표 5〉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현황(조원)

	1998	2004	98~04
조정후 순자본이득	-59	169	511
양도소득세부과세액	2.4	4.4	20.4
추정부담세율 ¹³⁾	15%	15%	15%
신고이득	16.0	29.3	136
노출실현율			27%
실효세율			4%

8) 아래 자본이득과 조세에 대한 논의는 2004년 귀속분까지로 한정한다. 아직 2005년 귀속분에 대한 과세현황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9) 우리 세제를 당장 Haig-Simons 식의 개념으로 구성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10) 국부통계는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이나 금융자산에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다른 자료를 찾기 곤란하여 동 자료를 이용하였다.

11) 법인세로 과세될 것이기 때문에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12) 언젠가는 실현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현이 세대를 거쳐 미루어지거나 아예 영구히 과세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세의 경우 stepped up basis의 문제가 그것이다.

13) 90년대 확대원 등의 자료에 의한 수치이며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현재도 전체적인 양도차익에 대한 실효세율로 확대하여 보는 것이 유의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실제 실효세

중국적으로 개인의 자본이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자본이득(위 표 5에서 조정후 자본이득) 중 약 4분의 1정도만 실현되고 과세된 것으로 파악된다. 적지 않은 자산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을 것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추가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주식은 실현율이 매우 높을 것임을 고려한다면 과세되지 않는 부분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자본이득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것, 즉 실현되지 않거나 과세되지 않고 있는 부분 중 상당 부분이 부의 무상이전으로 영구히 과세되지 않는다. 요컨대 자본이득은 피용자보수나 영업잉여에 비해 과세노출율이 너무 낮다고 판단된다.

과세노출율이 낮아 실효세율도 높을 수 없으며 약 4%에 그친다. 이는 근로소득 수준과 비슷한 것인데, 근로소득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저임금근로자가 많기 때문인 데에 반하여 자본이득은 과세노출율이 낮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세대1주택비과세, 소액주주상장주식 양도차익비과세와 같이 비과세되는 것이 많고,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소득과세가 없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보인다.

나. 금융자산소득과세

금융자산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은 이자, 배당 및 자본이득이다. 이자와 배당은 국민소득 중 영업잉여의 일부분으로 산입된다. 우선 이자와 배당에 있어서는 사업체에 최종 귀속하는 것은 종합소득신고나 법인세신고시 결정소득금액에 포함될 것이며, 개인에 최종 귀속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원천징수지급액에 산입된다. 이자와 배당지급액 중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신고 되는 비율은 2004년의 경우 2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당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이미 과세되고 남은 것 중 일부이므로 경제적 이중과세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점은 앞의 분석에서 법인사업실효세율이 개인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도록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자본이득은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증서화된 금융자산의 처분이익이 주를 이룬다. 계약에 의한 지위로서 파생거래 position의 해소에 따른 손익도 자본손익이라 할 것이다.

먼저 아래 <표 6>에서는 개인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신고 현황을 살펴본다.

<표 6> 이자 배당 원천징수 현황(조원)

	1997(A)	2004(B)	97~04
이자원천징수	3.52	1.60	27.58
지급신고액	30.93	15.67	244.11
실효세율	11.4%	10.2%	11.3%
배당원천징수	0.23	0.62	3.85
지급신고액	1.71	6.69	33.76
실효세율	13.7%	9.3%	11.4%
종합소득신고금융소득	5.58	4.95	
종합소득신고추가납부세액	0.45	0.42	
전체개인금융소득실효세율	12.9%	11.8%	11.9%

율이 15%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노출실현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이자와 배당은 일부 사금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노출율이 높을 것 같지만 비과세 및 감면으로 실제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간 원천징수세율이 14% 내지 15%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실효세율이 11%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비과세나 감면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과세노출율은 75% 내지 8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피용자보수의 과세노출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종합소득¹⁴⁾ 신고를 감안한 실효세율은 12% 수준이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비교할 경우 중간 정도 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사업소득 실효세율과는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다. 이론적으로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하도록 한다면 근로소득자가 얻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실효세율인 3%(피용자 보수의 실효세율은 2.8%) 수준으로 과세되기 시작할 것이며, 개인사업소득자가 얻는 것은 12%(개인사업의 실효세율은 11.9%)의 수준으로 과세되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비교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다음 유가증권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여 보면 아래 <표 7>과 같다. 거래소상장주식 및 KOSDAQ상장주식의 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의 기간 동안 순가치증가액은 각각 342조원 및 24조원이다. 그리고 작년 한해만 약 282조원의 가치증가가 있었다.

<표 7> 주식 자본이득 추이(조원)

	1997	1998	2004	2005	98~04
상장주식	70	137	412	655	
KOSDAQ	7	7.8	31	70	
상장주식(증가)		67	57	243	342
KOSDAQ(증가)		0.8	-6	39	24

국세청이 공개하는 자료에는 개인의 양도소득세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순자산가치의 증가액 중 얼마나 과세되고 있는지 국세청 자료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는 개인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약 13%¹⁵⁾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주식 뿐 아니라 채권시장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97년 180조원이던 채권잔고가 2004년말에는 524조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의 채권양도차익도 적지 않은 규모로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역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유가증권자본이득 중 소액주주 귀속 주식양도차익, 개인 귀속채권양도차익은 전체 자본이득 중

14) 위 <표 6>에서 합산 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실효세율(정부가 발표한 바 있음)이 적용될 것으로 보았다.

15) 2005년 3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조사한 '2004 주식분포상황조사'에 의하면, 시가총액기준으로 개인이 20.8% 보유하고 있다(외국인 40.1%, 일반법인 18.0%, 기관투자자 17.0%, 정부 4.2%). 개인의 보유분포를 보면 주식 수 기준으로 소액주주가 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소액주주는 전체의 13.79%를 가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주주가 가진 주식의 시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감안할 경우 소액주주의 보유비중은 13.79% 이하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서는 13% 수준으로 보기로 한다.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조세조약이 적용되므로 지분비율이 높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을 것이다.¹⁶⁾ 개인 대주주의 소유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개인 대주주와 소액주주에 귀속하는 유가증권의 과세노출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은 분명하다. 이는 전체 적으로 금융자산소득의 과세노출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파생상품시장을 보면 지난 수년간 그 규모가 엄청난 속도로 커가고 있다. 예를 들어, 파생 상품거래 중 대표적인 거래 중의 하나인 KOSPI 선물거래 중 개인거래는 97년 70조원에서 2004년에는 2884조원으로 급성장하였다.¹⁷⁾ 개인의 파생상품거래는 과세되지 않고 있다. 비단 복합적인 파생 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파생거래에 있어서는 일정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과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소결론

전체 소득과세에 있어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른 종류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부분이 많아 과세노출율이 높지 않다. 경제사회 전체 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피용자보수나 영업잉여의 과세노출율이 높은 것에 비하면, 금융자산소득은 경상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과세에는 매우 낮은 과세노출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자산소득은 거래의 특성상 과세당국이 소득의 귀속명의자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과세노출율이 낮은 것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정책적으로 비과세하는 자본이득이 문제이다. 특히 사회 전체의 금융자본의 지배 력이 강화되고, 직접금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자산가치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게을리 하는 것은 조세의 공평성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또한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방식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영구히 불가능하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현행 세제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종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복구의 DIT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자산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종료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히 DIT¹⁸⁾제도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적지 않은 논거가 확보되어 있으며 복구국가를

16) 이 부분은 본 연구의 논의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7) 개인의 파생상품거래가 과열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옵션거래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의해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한 손실은 고스란히 시장의 다른 참여자의 이득으로 돌아가고 있다. 즉 일반법인, 금융사 및 외국인이 그러한 이득의 주체이다.

18) DIT는 80년 대 복구국가를 중심으로 시험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일부 유럽국가가 도입하게 됨에 따라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 제도이다. 미국의 Haig-Simons식의 소득과세개념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소득을 투자자산소득(investment income)과 노무소득(earned income)으로 양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단일(또는 두개 정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초과누진세율에 의한 신고 납부제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제도 유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중심으로 동 제도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DIT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대부분 부유세를 도입하여 비례세율에 의한 원천징수의 역진적 성격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형평을 강조하는 우리의 사회문화 그리고 그간 우리가 추구해 온 세계개편의 방향을 감안할 때 DIT제도 보다는 포괄주의적인 방향으로 세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수증자에 대해 과세하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포괄주의적으로 과세하면서, 증여와는 단지 대가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차이 밖에 없는 소득에 대해서는 열거주의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내년부터는 개인의 세후소득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여 보장하는 Earned Income Tax Credit(근로소득장려세제, 이하 EITC)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세후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보전하겠다는 관점이다. 물론 근로소득자만이 그러한 관점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은, EITC 제도가 형평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면서 소득종류별로 차등 대우한다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포괄주의적인 세제를 전제로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에 대해 제한적 포괄주의적인 규정이 도입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소득세제는 단계적으로 포괄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포괄주의로의 진행에 있어서 소득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는 반드시 특정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이나 손실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천징수로 종료하는 부분이 많아 귀속자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한 합산누진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자산소득 합산과세에 있어서는 차명방식의 거래가 기술적인 걸림돌이 되어 왔지만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차명을 규제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의 비례세율과세는 저소득층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격이 되고, 고소득층에는 높은 세율의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아래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와 금융자산 자본이득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금융자산 자본이득과세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제도 그리고 파생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순으로 논의한다.

III.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하 여부

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의의 및 연혁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소득을 종합하여 누진과세함으로써 소득세의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한다. 당시 정부의 세제개혁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로서 1993년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동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정상적인 금융관행을 기초로 분리과세 되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경제개발단계에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 세제상 우대조치를 취해 소득세의 수평적 공평성이 저해되어 왔었고, 금융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서 소득세의 수직적 공평성이 저해되어 있었다. 더욱이 금융실명제 실시 전까지 존재했던 ‘예·적금에 관한 비밀보장법’에 의해 금융자산에 대한 가명이나 차명 거래가 법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지하경제가 발전되어 금융시장에 대한 교란과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변하고 세원포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과세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아래에서 동 제도의 연혁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993년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게 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동 제도의 시행은 금융실명제를 완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종합과세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사전 행정준비를 위해 1994년에 입법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종합과세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서 1996년부터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하여 4,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1998년 귀속 금융소득분부터 금융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유보되었다가 2001년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금융소득분부터 재실시 하게 되었다. 그런데 2002년에는 그간 논란이 되던 금융소득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기준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부부합산에서 개인별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2004년부터는 소득세법에서 당연(무조건)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¹⁹⁾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현재 당연(무조건)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 남게 됐다. 그런데 이 유형의 비중은 납세인원이나 소득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금액이 개인별로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다.

2. 문제점

가. 실효성 측면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1996년에 비해 경제규모나 경제환경 및 동 제도 자체에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동 제도가 도입될 때의 도입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동 제도는 소득세의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고액의 금융자산소득자에 대해 보다 많은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동 제도의 도입취지이다. 동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던 1996년에 비해 금융자산의 규모 중 상장주식의 규모는 약 9배(70조 → 655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코스닥등록주식도 약 10배(7조 → 70조)로 획기적인 증가가 있

19)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원이하 이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금융소득을 말하는데, 이에선 비영업대금의 이익,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 있다.

었다. 또한 금융저축규모도 약 2배(798조 → 1,609조)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금융소득종합소득 신고금액은 오히려 1997년에 약 5조 5천 8백만원에서 2004년에 4조 9천 5백만원으로 줄어 들었다. 또한 개인의 금융소득 실효세율도 1997년에 12.9%에서 2004년에 11.8%로 오히려 낮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경제환경이 변하는데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제대로 개편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동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는 부부합산을 기본원칙으로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이었으나, 2002년에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개인별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다. 그런데 개인별 과세로 바뀌었지만 과세기준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높아진 결과가 야기되었다. 즉 부부의 소득을 합칠 경우 사실상 금융소득이 8,000만원을 넘는 가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 또한 2004년에는 소득세법에서 당연(무조건)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현재 당연(무조건)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 남게 됐다. 그런데 이 유형의 비중은 납세인원이나 소득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금액이 개인별로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 자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도입취지가 점점 약해지는 쪽으로 변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당연히 동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개편을 모색했어야 했는데,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원이나 소득금액을 보면 동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졌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표 8〉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금융소득 계급별 신고현황(2004년)

계 급	인 원(명)	소득금액(백만원)
4,000만원 이하 ¹⁾	802	5,247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8,189	402,464
6,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3,941	272,162
8,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333	208,150
1억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1,596	175,572
1억 2,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2,918	445,773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610	797,407
5억원 초과	1,597	2,640,802
합 계	23,986	4,947,577

1) 4,000만원 이하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으로서 종합과세 되는 소득임.

출처 : 국세청, 2005, 국세통계연보.

4,000만원 이하인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신고를 한 인원이 23,184명으로 나타났다. 이 인원은 원천징수 납세자를 포함하지

많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4,363,257명(2004년 기준)이므로 이 중에서 0.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천납세의무자를 포함한 1천 6백만명(2004년 기준)²⁰⁾ 중에서는 0.14%에 불과하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인원이 소득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재분배나 공평과세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위 <표 8>에서 제시된 자료는 그나마 과세당국에 금융소득금액을 신고한 인원만 집계된 것이며, 차명계좌를 여러 개 개설해 금융소득을 분산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소득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된다. 즉 제도 자체의 문제로 인해 금융소득이 많은 상당수 납세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동 제도를 교묘히 피해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이제 불가피하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나. 공평성 측면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소득세의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금융소득이 많은 납세자들은 더 무거운 소득세를 부담하고, 금융소득이 적은 납세자들은 더 가벼운 세 부담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동 제도가 목표로 하는 수직적 공평성 제고이고, 다른 소득유형과 비교했을 때 같은 소득금액에 대해 같은 세 부담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동 제도가 목표로 하는 수평적 공평성 제고이다. 이하에서는 현재 동 제도가 이와 같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수직적 공평성 측면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아래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앞 <표 6> 이자 및 배당 원천징수 현황을 통해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적으로 이자소득의 실효세율은 11.3%이고 배당소득의 실효세율은 11.4%로 나타났다. 지난 기간동안 원천징수세율이 14% 내지 15% 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과세나 감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고려할 경우 개인 금융소득의 실효세율은 지난 기간 동안 11.9%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완납적인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에 비해 실효세율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금융소득이 많은 소득계층이나 적은 소득계층에 따라 세 부담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금융소득에 따른 수직적 공평성 제고에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위에서도 분석했듯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납세인원 자체가 지극히 작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려할 경우 실효세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둘째, 기준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자들에게 과세되는 원천징수세율이 높고 또한 이런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라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고 있다. 즉 금융소득이 유일한 소득원인 노년층의 경우 이러한 원천징수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실제

20) 근로소득자 중의 일부는 확정신고대상 과세인원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인원은 중복적으로 계산되었다.

로 각종 공제를 고려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더라도 금융소득이 대략 8,000만원 정도까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신고한 금액이 미미할 수 있다. 넷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소득자들의 경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종합과세 대상에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수평적 공정성 측면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 2장에서 제시된 자료 중 각 소득유형별로 실효세율만 추출하면 아래와 같다.

〈표 9〉 소득유형별 평균실효세율(1997년 ~ 2004년)

소득유형		평균실효세율(%)
근로소득(피용자보수)		2.8%
사업소득(영업이익)	개 인	11.9%
	법 인	23.2%
양도소득(자본이득)		4%
금융자산소득과세	이자소득(원천징수)	11.3%
	배당소득(원천징수)	11.4%
	금융소득종합과세	11.9%

위 <표 9>에 의하면 소득유형별로 평균실효세율에 매우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완전포괄주의 소득세체계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일부 소득유형의 경우 세율이 제대로 포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먼저 근로소득의 낮은 실효세율은 일반적인 공제수준인 15백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노동자들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의 낮은 실효세율은 과세노출율이 낮는데 기인하는데, 특히 1세대1주택비과세, 소액주주상장주식 양도차익비과세와 같이 비과세되는 것들이 많다.

금융자산소득과세의 적정한 실효세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나, 위 <표 9>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이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한정된 자원들이 자본이득에 대한 낮은 세금부담 때문에 기형적으로 자본이득을 얻기 위해 몰려 전체적으로 자본시장을 왜곡시킨다. 따라서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자금흐름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에 대해 적절한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개편방안

가. 기준금액 인하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원칙은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세 부담의 형평성과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준금액의 설정에 따라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신고부담의 크기, 세 부담의

변화 및 세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박원암 외 1994, 214-215). 따라서 기준금액의 결정은 금융소득관련 조세자료를 이용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기준금액의 변화에 따라 세수가 어떻게 변하고 소득계층별 세 부담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성명제 · 김영준 1998, 65). 즉 실증조세자료를 이용하여 엄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기준금액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엄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논의로서 기존의 주장들을 소개하고 바람직한 기준금액 수준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먼저 최명근 석좌교수(강남대)는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안으로 개인별로 이자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해야 하며, 1,0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분리과세를 하되 소득세 최저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최영태 조세개혁센터 소장(참여연대)은 현행 4,000만원인 기준금액을 1,000만원 정도로 낮춰야 하며, 차명계좌를 금지시켜야 실제소득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안중범 교수(성균관대)는 현행 기준금액인 4,000만원은 과세대상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기준금액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부합산과세가 개인별과세로 바뀌면서 4,000만원인 기준금액은 결국 8,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본래 입법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2,000만원 정도로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¹⁾

본 연구는 위의 주장들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금액 인하를 제안한다.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던 1996년의 경제규모와 경제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그 당시의 입법의도를 충분히 살린다는 견지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0년 전에 비해 우리 경제규모나 경제 환경이 상당히 변하였고 특히 시장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금액이 현재에 있어서도 타당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준금액을 2,00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다. 2,000만원 미만 중에서 구체적인 기준금액의 결정은 세 부담의 형평성과 세수의 안정적 확보 및 행정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²²⁾²³⁾

21) 조세일보, 이슈 진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고소득층만 호호, 2006.2.15.

22) 구체적인 기준금액의 결정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또 다른 연구주제라고 판단된다.

23) 기준금액을 인하 하자는 주장에 대해 ① 해외투자자금이 대거 빠져 나갈 것이라는 반론, ②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 자금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반론이 가능하다. 먼저 해외투자자금의 이탈은 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제한세율에 의해 재반론이 가능하다. 즉 해외투자자가 받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 일정한 세율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해 해외투자자는 우리나라 세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조세조약에 정해진 제한세율에 의해 납세를 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에서 이자나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은 대개 10-15%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둘째, 제도권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이탈에 대한 염려는 동 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당시 자료를 통해 재반론이 가능하다. 동 제도의 최초 시행을 앞둔 1995년말에서 1996년 초 기간에 이동한 자금은 약 6조 5천원으로, 이는 1995년 9월 기준의 개인보유 금융자산 잔액 442조의 1.5%, 우리나라 금융시장 규모(비금융부문 보유 금융자산) 900조의 0.7%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동 제도가 재시행된 2001년말 기준 개인부문 금융자산 보유액을 보면 시행 전인 2000년말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결과는 동 제도의 최초 시행 및 재시행으로 금융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것

나. 기준금액 이하인 자에 대해 과세방법 선택권 부여 및 비교과세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행정부담의 급증을 피하기 위해 기준금액 이하인 자에 대해 종합과세 선택을 불허하고 완납적 원천징수인 분리과세만 허용함으로써 앞에서 분석한대로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한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히 기준금액 이하인 자가 종합과세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기준금액 이하인 자라도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앞에서도 분석했듯이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분리과세되는 실효세율이 이자소득은 11.3%이고, 배당소득은 11.4%인데 반해,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의 실효세율은 2.8%에 불과하다. 또한 금융소득이 작은 납세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인해 종합과세를 받는 경우에 비해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납세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즉 종합과세를 선택한 납세자는 금융소득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함으로써 분리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한다(김진수 2004, 177 참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소액인 경우 원천징수세율(14%)보다 낮은 세율인 기본세율 중 최저세율 8%를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득 비교과세제도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을 두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최소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게 세 부담을 하는 모순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동 제도는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인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을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하여 세무행정비용 및 납세순응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김재진·한상국 2003, 38). 더욱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에 대해 과세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도입된다면, 금융소득에 대한 최저세율을 원천징수세율(14%)로 제한하는 제도인 금융소득 비교과세제도는 더 이상 존립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요컨대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인 기준금액 이하인 자가 부담하는 높은 세 부담은 기준금액 이하인 자에게 과세방법을 선택하게 하고, 금융소득 비교과세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제대로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회의 인프라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 금융실명제도가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금융실명법에서는 차명거래를 금지하지 않아 차명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차명금융거래를 규제하여 차명금융자산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명금융거래가 적발된 경우에는 차명거래

을 나타내주고 있다(민주노동당 정책자료집, 2005.1 참조).

의 목적이 된 금융자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과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김재진 2003, 233-234 참조).

라. 종합소득 포괄범위 확대

앞에서도 분석했듯이 자본이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다른 소득유형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즉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현행 양도소득세에 포함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체계에 포함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 더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전 세계적인 확실한 추세는 포괄주의 소득과세에 근접한 나라일수록 자본이득을 개인소득세체계 내에서 과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노영훈 2002, 95). 대표적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을 들 수 있으며, 덴마크, 영국 및 포르투갈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본이득에 대해 별도과세를 하다가 개인소득세 체계에 포함하였다(노영훈 2002, 30). 또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장주식양도차익이나 파생상품소득 등과 같은 자본이득적인 소득을 양도소득세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노영훈 2002, 95).²⁴⁾ 따라서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금융소득종합과세체계 내에 자본이득적인 소득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V.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1. 현행 주식 양도차익과세제도의 내용

가. 현행 소득세법상의 규정

양도소득이라 함은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자본적 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적 자산의 시가 또는 처분가액에서 그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차익이 양도소득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양도소득 중 개인²⁵⁾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전면과세하고, 상장주식(주권 상장된 주식과 코스닥 상장된 주식 포함)²⁶⁾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24)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상장주식양도차익이나 파생상품소득 등과 같은 자본이득적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25)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상장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비과세되는 예외가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26) 2005.12.31 소득세법(법률 제7837호)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94조제1항 제3호 나목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

2호). 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식이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권상장도 코스닥상장도 되어 있지 않는지, 보유하는 자가 대주주인지 아닌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세율의 높낮이나 종합 또는 분리과세 여부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세율과 과세방식의 차이는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거주자의 국내자산인지 국외자산인지 여부, 주식이 내국법인의 주식인지 외국법인의 주식인지 여부, 장단기 보유인지 여부, 중소기업 주식인지 여부, 장외거래인지 여부 등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조약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국내법적인 측면에서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문제만을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기타 자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생략한다.

지금까지 주식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세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현재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신고 및 납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납부할지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이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주식등(비상장주식과 일정한 상장주식)과 토지등(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인 연 25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나, 주식등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양도차손은 주식등과 토지등별로 당해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양도차손의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식등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등의 양도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주식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주식등의 경우 기본세율이 10%, 20%, 30%가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탄력세율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여 나온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된다(소득세법 제93조 제2항).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인"이라 한다"으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이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종전에는 상장주식이라고 하면 주권상장주식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협회등록된 주식까지 포함한 것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협회등록"이 "코스닥상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상장주식이라고 하면 종전의 협회등록주식까지 모두 포함하는 용례로 사용한다.

나.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의 변천과정 : 과세대상의 확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점차적으로 과세대상을 넓혀왔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이전에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여 왔고, 개인의 경우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상장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로 과세하였다.²⁷⁾ 이에 반해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육성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중시하여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특정주식의 양도소득 또는 비상장주식의 보유이익잉여금증가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과세하였다. 그러다가 1991년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1999년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는 결국 주식양도차익의 전면과세로서의 의미를 갖는다.²⁸⁾

다.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현황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찬성론은 자산양도차익간 공평성을 제고하자는 측면에서 논의되기도 하고(김재진·한상국 2003, 17), 비과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과세를 통해 건어 들여 부족한 세수입을 일부 충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에 의해 실제로 세수감소분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공평성 측면, 세수 증대 측면의 주장이 다른 반대론의 주장 보다 우위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소액주주가 주권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을 통해 양도차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자료는 없다. 이는 여러 통계자료를 근거로 추산할 수는 있을 것이다. 2004년도 우리나라 주권상장주식과 코스닥상장주식²⁹⁾의 시가총액에서 2003년도 주권상장주식과 코스닥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을 빼면 주권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추산할 수 있다.³⁰⁾ 2004년 주권상장주식 시가총액은 412조원, 코스닥상장주식 시가총액은 31조원이었고, 2003년에는 각각 355조원, 37조원이었으므로, 2004년도 상장 및 협회등록주식의 양도차익은 51조원이라 할 수 있다.³¹⁾

27)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차별에 대한 비판으로는 유시권, 비거주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1.4 참조.

28) 다만 주식양도시 누리는 이익은 꼭 주식의 처분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당을 통해 주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주주는 주식가치의 상승분을 취득할 수 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전혀 과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양도차익과세와 배당과세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29) 2005년 12월 이전의 통계자료의 경우에는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용어의 통일을 위해 현행법하의 용례를 사용한다.

30) 실제로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즉, 미실현이득까지 포함된 것이기는 하지만,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주식의 경우 부동산과는 달리 1년에도 수차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실현이득이 추산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1) 2005년도 상장 및 협회등록주식의 양도차익은 282조원이다. 2005년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655조원, 협회

이러한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주식 양도차익 중 소액주주에게 귀속되는 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일반법인, 기관투자자, 정부 그리고 대주주인 개인에 귀속되는 부분을 공제해야 할 것이다. 앞 장에서 이미 개인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약 13% 내외로 추산된다고 보았다.³²⁾ 51조원의 양도차익에 13%를 곱하면 6조 6,300억원이 소액주주의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된다. 여기에 세율 10%³³⁾를 곱한다면 6,630억원³⁴⁾이 된다.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한다면 대략 6,630억원 정도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세수입만을 본다면 2004년도 소득세 수입인 23조 4,340억원의 2.8%, 국세수입인 110조 2,170억원의 0.6%에 해당한다.

다만 2004년도 기준으로 개인인 소액주주³⁵⁾는 2,964,938명으로 이러한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는 결과적으로 약 3백만명에게 새로운 과세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약 6,630억원의 세수입을 추가로 걷는데 따른 집행비용이나 납세자의 순응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집행비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현행대로 소액주주의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주식의 비과세론을 주장한다.

한편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는 소액주주의 경우 현재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되지만, 증권거래세의 부담은 지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사실상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만약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면³⁶⁾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입 감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4년 현재 증권거래세의 세수입은 1조 3,015억원으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따른 세수입인 6,630억원보다 많다. 그러나 2005년의 주식가치에 따른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세수입이 3조 6,660억원으로 보는 경우에는 더 적을 수도 있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환과 증권거래세 폐지가 함께 되는 경우에 세수입이 합

등록주식 시가총액은 70조원이었고, 2004년에는 각각 412조원, 32조원이었다. 다른 통계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 32) 비과세되는 소액주주는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3%(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5%) 미만이고 지분총액 100억(벤처기업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통계자료에서 전체 주식수중 1%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의 주식수 기준에 따른 보유비중만을 고려하였다는 점 등에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증권선물거래소, 2004년도 주식분포 상황조사, 『KRX Review』 2005년 4월호, pp.30-32 참조.
- 33) 소액주주의 상장 및 협회등록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자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현재 10%, 20%, 30%의 세율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는데, 비과세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일단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10% 세율이 적용된다고 전제하기로 한다.
- 34) 200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3조 6,660억원이 될 것이다. 주가의 등락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세수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상장 및 협회등록 주식의 시가총액의 상승은 과세시 예상 세수입이 3조를 넘게 된 것이다.
- 35) 당해회사의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통계로서 소득세법상 상장 및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소액주주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지분율이 3%보다 훨씬 낮은데도 전체 주주 수에 있어 99.2%를 차지하므로, 지분율 1%와 3%사이의 주주 수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의 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36)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확대여부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존폐검토를 해야 한다는 견해로는 김재진·한상국, 전개논문, p.17 참조.

쳐서 늘게 되는지 여부는 주식시장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증권거래세 세수입 감소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세수입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현재 징수가 편리하고 징수비용이 낮다는 장점을 갖는데 이를 포기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전환이 되면서 소액주주의 세 부담은 늘어나고, 기관투자자들과 대주주는 증권거래세 부담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 외국의 입법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과세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소득세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이 단기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되고 장기에는 분리과세된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되면서도 주식양도차익은 장단기에 구별 없이 신고분리 과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 비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분류소득과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일본과 입법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문제점

수평적 공평이 문제될 수 있다.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자본이득,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자본이득 및 토지 및 건물의 자본이득과 공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자산소득 및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비교해 보아도 그러하다. 같은 소득에 대해 같은 세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을 해하는 것이다.

소득자의 인격에 따른 차별도 수평적 공평을 해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반해, 법인의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처분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소득자의 인격에 따른 차별로 인해 사실상 법인 자신이 주식투자를 하면서도 명의는 임직원 개인명의로 투자를 하는 변칙거래가 나타나기도 한다(윤종훈 2002, 135).

주식가격이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 고액의 자본이득이 과세에서 제외되어 수직적 공평을 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외에 소득자의 주식소유지분에 따라 과세상 취급이 달라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김완석 2006, 109).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식발행법인에 따라 다액의 양도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수십 또는 수백회사의 주식을 소액주주의 기준에 맞게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 다액의 양도차익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개편방안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였을 때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선택해야할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쟁점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본다.

가. 취득가액의 평가방법

현행법 하에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양도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 162조 5항).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특정상장주식으로서 수차에 걸쳐 주식 중 일부 양도시 양도차익계산에 대해 실무에서는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개별법),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선입선출법)(재산 46014-1940, 1999.11.6).

상장주식이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개별법과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면 될 것이다.

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등 양도소득 특별공제 인정 여부

개인투자자들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의한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소액투자자들에게 기존의 양도소득공제 연 250만원 외에 추가로 연 일정한 액수를 소득공제제도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다.

주권상장주식이나 코스닥상장주식의 경우와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별공제 유무에 차이를 두게 되는데,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장주식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코스닥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사이에 차이를 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다른 양도소득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다. 세율

과세를 하더라도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과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주식양도차익과세의 세율 중 가장 낮은 10%로 정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적합할 것이다. 대주주, 단기매매 및 중소기업에 따라 세율을 달리할 지 문제는 일단 최저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장기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기존 비상장주식의 경우와 같이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라. 증권회사의 원천징수의무

소액주주의 경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상장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으로 상장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액수의 다과에 상관없이 그동안의 거래내역과 실적 등 개인의 거래정보가 이미 전산자료화 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증권회사도 갖고 있고, 전산화되어 있다면 소액주주 본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04년도 기준으로 약 3백만명의 개인 소액주주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보다 40개에 못 미치는 증권회사³⁷⁾가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

37) 2005.9.30 현재 국내증권회사가 39개이다. 한국증권업협회, “증권회사 현황”, 증권 125호, 2005.12, p.162 참조.

적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원천징수의무라는 것이 일정한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지게 된다(소득세법 제127조). 증권회사는 ① 유가증권의 매매업무, ②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대리,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대리 등의 업무, ③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및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증권거래법 제28조). 증권회사가 소액주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유가증권의 매매를 해 주지만 이자를 주어야 하는 은행, 배당을 주어야 하는 회사, 봉급을 주어야 하는 회사와는 달리 자신이 주식을 파는 자로서 주식대금을 주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주식을 파는 자로서 주식대금을 지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주식대금 지급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는 소액주주의 과세문제이다.

3백만이라는 숫자와 40여개라는 숫자의 비교와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증권회사에게 징수의무를 지을 수는 없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간접세로서 증권회사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

마.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궁극적으로는 세 부담의 공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시재산소득도 넓은 의미의 양도차익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볼 때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일부를 종합과세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바. 양도차손의 통산 및 이월공제 문제

현행법 하에서 주식의 양도차손은 다른 소득 심지어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과의 통산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동일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평을 이유로 주식양도차익의 전면과세를 받아들인다면 주식거래에 따른 손실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양도차손을 주식 등 이외의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종합소득과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소득과의 양도차손 공제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식조작을 통해 가공차손을 만들어 소득세를 줄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익이 대비하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좋지 않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적게 내고, 경기가 좋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므로 경기조절기능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종합소득 및 산림소득에서의 결손금과 같이 5년간 이월공제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가격변동이 심한 주식의 경우 소득을 줄이기 위한 기간조작에 이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제도 초기에는 양도차손의 이월을 1년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시행일

단기적으로는 현행 비상장주식의 과세방식에 따르면서 변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현행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방식까지 변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 증권거래세의 존치여부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사실상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로서의 성격도 갖는 것으로 증권거래세와 함께 주식의 투자수익율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그러나 양도차손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증권거래세보다 더 나은 세제라 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를 없애야 한다면 증권거래세를 없애야 할 것이다.

V. 파생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1. 파생금융상품 과세현황

정부는 2004년 소득세법 개정작업 당시 개인의 파생상품소득에 대한 과세근거조항을 담고자 하였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마침 2004년이 증권선물거래소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시점이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며, 현물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추후 재검토하기로 한바 있다(김낙회 2005, 279). 당시 정부의 안을 보면 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그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당시 입법 보류 이유의 하나로 지목되었던 현물시장에서의 유가증권 양도차익 비과세 폐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증권선물거래소의 부산 이전도 종료된 시점이다. 이하에서는 파생상품소득 과세문제에 대해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파생상품거래는 거래의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제도권 시장이 설정된 거래, 그렇지 않은 거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이 실물자산인지 금융자산인지에 따라 실물파생거래, 금융파생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선도(선물), 옵션, 스왑 등의 단순파생거래와 그러한 단순파생거래를 분할·병합하거나 실물거래와 연계한 복합파생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파생상품계약의 실행에 따른 각 당사자들의 손익을 합산하면 영(0)이 된다. 일종의 도박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도박과 달리 단순히 오락을 위한 것은 아니며, 위험회피·재정 또는 투기목적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손익은 일종의 자본손익이다. 시장에서 자산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을 현재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산가치의 변화에 따른 손익을 자본손익으로 정의한다면, 파생상품손익은 자신이 가진 계약상의 지위(그것은 정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의 자산이 될 수도 있음)의 가치변화에 따른 손익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손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파생상품손익은 도박손익과는 다르다.

과세측면에서 보면 폐쇄경제에서는 정부가 파생상품거래 손익에 대해 과세한다 하더라도 세수의 증가효과는 없으며, 단지 각 거래당사자의 조세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과세를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과세당국이 도박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도박손실은 손실로 인정하여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득만 과세하고 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세수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응능부담 원칙에서 보아 바람직하지 않다.³⁸⁾ 개방경제 하에서 파생거래의 상대방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 그에 귀속하는 손익이 국외원천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우리나라의 과세관할권을 벗어날 것이지만,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가 지속될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요컨대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손익에 대한 과세는 세수목적보다는 조세형평성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파생상품계약에서는 예측을 사고판다. 파생상품계약은 시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고 일방적으로 지위를 구축하는 반면, 장외(over the counter)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서로 위험과 비용을 분할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비록 특수 관계가 없는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계약에 의해 소득의 귀속주체, 귀속하는 소득의 종류 및 인식시기를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시장의 역할을 하는 금융회사가 그러한 계약을 중개할 수 있다. 이는 비교적 여유자금의 풍부한 대규모법인이 역외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즉 조세재정행위도 가능하다. 우리의 법인세법은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specific anti-avoidance rule, SAAR)을 두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개인의 파생상품소득과세에 대해서 논한다. 이 경우 부수적으로 세수증대효과와 조세의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도 기대된다. 파생상품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초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는 별개의 것이지만 기초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동시에 도입되는 것이 우리 과세정서에 부합한다. 과세 기술적으로는 파생상품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하는 것이 타당할지 검토한다. 그리고 분리과세와 합산과세를 비교하고, 징수방법에 있어 원천징수와 신고납부방법을 비교한다. 본 연구는 개인에 대한 파생상품소득과세방안에 대해 논하면서 이와 더불어 주로 법인거래에서 나타나는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다만 지면상 ELS와 같은 결합파생상품에 관한 논의는 생략한다.

우리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파생상품거래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파생상품소득은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개인의 자본이득과세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4조에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자본이득적인 성격의 소득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관한 부분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파생상품소득이 그러한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적인 성격도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2001년말 도입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상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

38) 미국세법은 도박손실과 도박이득의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IRC §165(d)).

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포함되는지가 검토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물이나 옵션의 거래에 따른 이득에 내재되어 있는 이자부분을 가려내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그러한 부분이 가려진다 하더라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인지 밝히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상의 규정으로 개인에 귀속하는 파생상품손익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이 해외투자 하는 경우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는 거주자의 portfolio 투자에 한정된 것이다. 이론상 개인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지위의 처분에 의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것이기 때문이다.³⁹⁾

한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획득하는 파생상품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자목은...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⁴⁰⁾ 회계기준상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약에 따른 지위(position)를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지수선물거래 또는 선물거래법상 선물거래를 통하여 얻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장내파생거래에 따른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장외파생거래에 의한 소득만 과세된다. 비거주개인의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비과세된다고 할 수 있다.

장내파생상품거래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특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도 적용된다.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법인이 보유하는 모든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내국법인에 귀속하는 파생상품소득은 과세된다. 열거주의가 적용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되는 셈이다. 거주자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획득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이득이 과세되지 않는 만큼 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지 않는다.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파생상품손익에 대한 과세

	거주자	내국법인(고정사업장)	비거주자	외국법인
장 내	비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장 외	비과세	과세	과세	과세

그간 장내거래의 실적에 대해 현행 과세제도를 적용해본다면, 내국법인의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한편 개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해주지 않았으므로 세수차원에서는 정부에 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은 제도상 과세특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반면,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었

39) 물론 이렇게 신고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0)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9항

으므로 과세상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법인인데, 내국법인과 비교하여 과세상 형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파생상품손익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은 불명확하다. 만약 정부의 입법안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비록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의 범주가 국내세법상의 그것과 다르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부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법상 유가증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금융보험기관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그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교육세에 있어서 장내파생거래 영위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증권회사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많은 나라가 자본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내파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 문제점

가. 조세형평성 측면

(1) 소득 종류간

Haig-Simons의 포괄적 소득관념에 의할 때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 개인에게 귀속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어야 한다. 부의 무상이전과 유상이전의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도 있지만, 부의 유상이전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본 연구의 앞장에서 우리의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DIT적인 관점보다는 Haig-Simons의 포괄적 소득개념을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러한 관점에 입각할 때 파생상품거래 손익은 개인 납세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어야 마땅하다. 세제상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이득을 과세한다면 손실에 대해서도 이를 소득금액에 반영해주어야 한다. 이는 파생상품거래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조세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zero sum 시장에서 정부가 이득을 본 계층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현물 대 파생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과세하면서 파생상품은 과세하지 않는 경우나 반대의 경우에 과세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내국법인이나 고정사업장은 현물, 파생 모두 과세되며, 소액개인주주, 25% 미만 보유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현물, 파생 모두 비과세되며, 개인대주주와 25%이상 보유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현물은 과세되면서 파생은 과세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윤창현(2004)에 의하면 파생시장에 과세하고 현물시장에 과세하지 않으면 파생시장의 가격기능이 훼손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도 그러한 현상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외국의 경우에

도 현물과 파생간의 불형평성은 존재한다. 과세하더라도 서로 세율이 다르기도 하다. 국내 개인소액 주주는 거래소 주식시장에서 전체 시장의 20% 수준 내외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 점유비로 보아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의 가격기능훼손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현물은 과세하지 않는데 선물을 과세하는 것은 원천은 과세하지 않으면서 파생된 것은 과세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파생상품 자본이득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다. 파생상품소득은 현물시장과는 엄연히 별개의 것으로서 단지 그 현물시장의 가격을 전망한 것에 대한 기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파생시장이 존재함으로 인해 현물거래에 따른 가격위험, cash flow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되지만, 이는 경제적 기능이 그렇다는 것이지 현물에 내재하는 경제적 가치가 파생상품소득에 표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소액주주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안에 따르면 파생상품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하더라도 윤창현이 지적하는 불형평성에 따른 위험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3) 거주자 대 비거주자

상장주식에 대한 선물옵션소득은 내국법인은 과세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음에도 특별히 과세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것은 파생금융시장의 발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우리 시장은 이미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4) 세수입의 관점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파생거래소득을 과세하면서 손실을 감안해 준다면 개인으로부터의 세수는 오히려 줄어든 가능성이 높다. 파생거래 손실을 파생거래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자본이득 또는 이자·배당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세수감소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다만 모든 경제주체의 파생거래 손익을 모두 과세소득 계산에 반영한다면, 정부의 순세수는 이론상 거의 0에 가깝게 될 것이다. 즉 정부가 파생상품거래 손익을 전면적으로 과세한다면, 세수측면에서의 이점보다는 조세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의 경제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조세회피의 문제 — 복합파생상품거래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여 소득의 종류, 귀속시기 및 귀속주체를 변경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장외거래를 이용하는데 특히 국외의 금융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이러한 활동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국외의 금융회사는 파생금융거래기법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면서 내국법인의 자금운용활동에 조세절약 내지는 회피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국내 당사자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회피행위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적용되는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 조세조약상 구체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조

항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지국의 국내세법에 의하여 대응한다. 국내세법상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 이하 GAAR)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확립한 해석상 원칙이 있으면 그에 따라 대응한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개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SAAR)을 입법하는 일일 것이다.

장외파생거래를 통한 조세회피가 개인거주자보다는 내국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거주자의 파생상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과는 무관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시장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도 가능하다. 시장을 이용한 차익거래가 그러한 예의 하나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세회피방지규정의 도입을 위해서라도 개인 파생상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익거래와 같이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얹혀 하나의 경제적 거래를 형성할 때, 개별 요소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데 전체 거래에 대해 과세할 경우 논리적으로 흠결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문제이다.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병합된 거래로부터의 이득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이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물환차익에 대해 현행 세법이 과세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이름 즉 이자로 과세하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요컨대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도입하면서 파생상품소득을 과세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개편방안

가. 파생상품소득 과세방안

우리 파생시장의 규모 및 발전단계를 감안하고 조세형평성 제고의 요청을 고려할 때 이제 파생상품거래 손익에 대해 과세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개방경제인 우리의 입장에서 외국의 제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거론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모든 나라가 파생상품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방식에 있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같은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손실은 이월이 가능한지 그리고 징수에 있어 신고납부로 할 것인지 원천징수로 종결시킬 것인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물시장에 있어 개인의 유가증권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그와 보조를 맞추어 나가면서 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소득의 본질적인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선물과 현물이 동시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2004년 파생상품소득을 과세하려 할 경우 선물과 현물간의 과세상의 형평성이 일부 문제되기도 하였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유가증권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과는 구분과세 된다. 특정 물건그룹 간에만 양도손익의 합산이 일정 기간 허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파생상품손익도 양도소득의 한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이기 때문이다.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주식 이외에도 채권, 상품으로 다양하게 넓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식양도차익의 변형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 하여 주식양도차익과 파생상품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넓

게 보아서는 주식양도차익과 파생상품소득을 종합소득의 하나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주식양도차익은 배당과 원천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으며, 파생상품소득은 일정 부분 이자적인 성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좀더 넓게 보면 주식, 채권 및 파생거래에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이득의 형태가 이자, 배당 또는 자본이득으로 다양할 수 있지만 원천은 금융적인 지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 가칭 투자자산소득(investment income)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당해 투자자산소득으로부터의 수익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하나의 basket에 담아 연간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도 조세의 형평성 나아가서는 중립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통합자산운용법이 발효되면 투자가 간접증권화하고 fund에 담긴 자금은 거의 모든 유형의 대상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 경우 간접증권으로부터의 소득을 일일이 원천까지 밝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할 수 없다. 어차피 이자 아니면 배당으로 구분하든가 미국식으로 자본이득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 세법은 간접투자자에 따른 소득을 이자나 배당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며 굳이 구분할 실익이 없다. 직접투자자에 의한 소득에 대한 과세와 간접투자자에 의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와 같이 통합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립성의 관점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양자의 공통점은 여유자금을 portfolio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과실을 바란다는 점이다.⁴¹⁾ 이러한 관점은 우리 소득세제가 보다 포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자·배당으로 한정된 합산과세의 범위를 가칭 투자자산소득으로 확대하면서,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되는 유가증권양도차익을 종합합산 하여 투자자산소득의 하나로 편입하고 그에 덧붙여 파생상품소득을 투자자산소득의 하나로 편입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위험회피목적의 파생거래로부터의 손익은 투자자산소득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손익은 대응하는 현물거래의 손익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포괄주의적인 과세체계로의 전환을 일시에 추진할 경우 그것은 우리 소득세 과세체계에 매우 큰 변화를 주는 것이며, 세수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가늠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세수측면에서는 유가증권양도차익은 모두 과세되므로 증권거래세는 폐지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세수증가는 있을 것이며, 파생상품소득으로부터는 당장의 세수증가를 기대하기 곤란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 경제가 얻는 것이 있다면 조세의 형평성 및 중립성 제고 및 경제안정장치로서의 기능회복 그리고 아래 서술할 조세회피방지일 것이다. 한편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로서는 우선 파생상품시장은 개인의 거래위험을 줄임으로써 시장안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기대소득을 줄임으로써 시장참여자를 줄이는 효과가 물론 있을 것이지만, 그간 정부가 파생상품시장의 이상과열을 우려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다음 유가증권시장에 있어서는 앞 4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대주주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식을 개인소액주주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자,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파생상품소득도 이와

41) 물론 직접주식투자자에 따른 배당세액공제, 부동산간접투자에서 개별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하다.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2,000만원 미만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서 더 나아가 유가증권양도차익이나 파생상품소득과 같은 자본이득적인 소득을 묶어 하나의 basket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원천징수제도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면서 차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조세회피방지방안

최근 문제되고 있는 엔화스왑예금과 같이 개인이 복합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조세절약 내지 조세회피를 추구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주로 법인의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한 종종 Tax Haven을 이용한 국제거래 그리고 국제금융회사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는 과세당국에 의해 Aggressive Tax Planning(ATP)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행정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ATP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가하기도 하는 방법이 그러한 것들이다.⁴²⁾ 정부가 ATP 대책을 너무 강하게 밀어 붙일 때 경시되기 쉬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가 사전에 과세당국에게 특정한 거래구조가 ATP에 해당하는지 문의하고 상의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외국에도 있다.

조세회피는 용어 자체가 말하듯이 조세절약, 탈세와 쉽게 구별하기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많은 경우엔 조세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세법은 경제현상의 변화를 따라가기 때문에 매번 사후약방 문격이 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그리고 해석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선 입법론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도입하는 방법이 그 첫 번째이다. 우리의 경우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그리고 국회계류 중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실질과세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GAAR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조세회피 전략에 과세당국이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우리 과세당국은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GAAR은 과세당국의 창의성을 필요로 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여러 나라가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SAAR을 도입하고 있다.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여 도입할 구체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은 미국내국세 입법에서 좋은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소유의제, 매도의제, 손실인식의 이연, 소득종류의 환원, 통합법 등의 규정들이 그러한 예이다. 파생상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에 걸맞게 우리 조세제도도 정치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42) 2006년 3월 정부는 ATP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VI. 결어 : 정책적 제언

먼저 현재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단일세율의 원천징수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복구의 DIT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DIT제도의 장점도 적지 않지만 과세상의 형평성 제고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는 제도이다. 우리의 경제사회적인 정서 그리고 우리 세제가 지향하는 포괄주의적인 접근방법을 감안할 때 소득과세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 합산기준금액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조세부담기능이 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유세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제가 부에 대한 과세기능을 일부 하고 있음에도 고액의 금융자산보유자에 대한 누진적 조세부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와 함께 저소득층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4%(주민세 포함 15.4%)의 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부담이 역진적으로 되고 있다. 즉 수직적 형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금융자산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소득과세에 있어 수평적 공평을 저해하고 있다.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감면하는 부분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겠지만 특히 유가증권양도차익이나 파생상품소득과 같이 비과세하는 부분이 문제이다. 이는 수평적 공평을 저해하고 나아가 합산과세 할 경우 가능한 수직적 공평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부의 무상이전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결여되어 있는 점도 문제라 할 것이다.

소득과세에 있어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자산종합과세의 대상을 2,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고액의 금융자산가에게 적절한 조세부담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준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자에게는 종합합산을 선택하도록 하여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비교과세제도를 폐지한다. 이를 통해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사실상 전 국민이 금융소득합산과세를 하게 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행정적인 부담은 선택과세를 하는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하되 이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EITC를 도입함에 따라 저임금노동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절차가 도입된 것처럼, 낮은 금융자산소득자를 위하여 종합소득 신고절차(간단한 연말정산신고 등)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가증권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과세하도록 한다. 유가증권양도차손은 일정 기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양도차익과 합산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상장주식과 채권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개인별 거래실적을 파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지 않은 투자자가 종합소득 신고기간 때 양도소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때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가증권양도차익은 투자자라면 거의 매년 발생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이를 종합소득유형의 하나로 분류하여 종합과

세 하는 금융자산의 하나로 편입하고, 유가증권양도차손을 다른 금융자산소득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파생상품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이는 복합적인 파생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의 종류에 있어서는 자본이득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의 하나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손실은 일정 기간의 범위 안에서 파생상품소득과의 상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금융자산소득과의 상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적인 측면은 유가증권양도차익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유가증권양도차익과 함께 종합소득유형의 하나로 분류하고 금융자산소득과 합산하여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차명계좌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차명금융거래가 적발된 경우에는 차명거래의 목적이 된 금융자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과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차명계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NRP(National Research Program)등 선진적인 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ITC의 사후검증절차와 같은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세제개편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이자, 배당의 합산과세기준을 하향조정하면서 비교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선택과세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유가증권양도차손익 및 파생상품손익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과세한다.

다음, 이자, 배당, 유가증권양도차손익 및 파생상품손익을 포괄하는 금융자산소득의 개념을 도입하여 합산과세 한다. 금융자산소득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합산과세 하고, 기준금액 이하인 자는 선택합산 한다.

마지막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통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영구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세제의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부의 무상이전을 소득의 실현 시기로 보는 방안을 도입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곽태원. 1993. “개발이익환수수단으로서의 양도소득세 합리화방안”. 정책연구자료 93-03. 한국조세연구원.
- 구정환. 2005. “파생금융상품의 과세문제와 향후 과제”. 주간금융브리프 14권 41호. 한국금융연구원.
- 국세청.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
- 국세청. 2003.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4.3.3. “개인투자자 KOSPI 200 선물·옵션에서 손실 지속”
- 김낙희. 2005.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조세법연구XI-2. 한국세법학회. 세경사.
- 김완석. 2006. 「소득세법론」. 광교이텍스.
- 김재진. 2003.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재진·한상국. 2003.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김진수. 2004.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노영훈. 2002.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데일리안정치. 2006.1.21. “NG내는 정부, 휘청대는 증시”.
- 민주노동당(심상정 의원 발제). 2004.8.20 “투명과세,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개혁 과제 - 부유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서민경제 살리기 연속토론회 2
- 민주노동당. 2005. “부유세 실현의 1단계 - 공평과세, 투명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정책자료집 05-01.
- 박원암·김상규·안종범·정영현. 1994. “금융실명제 실시 1년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박형수. 2002. “세수추계정밀도 제고를 위한 제도부문별 국민계정모형”. 한국조세연구원.
- 배민근. 2005.12.28. “우리나라 지하경제 줄고 있다”. LG주간경제.
- 성명제·김영준. 1998. “소득세제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성명재. 1998. “미국과 캐나다의 세수추계”. 한국조세연구원.
- 오 윤. 2003. 「금융거래와 조세」. 한국재정경제연구소.
- 오 윤. 2005. “복합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XI-2. 세경사.
- 오 윤·박 훈·최원석. 2006.4.1. “금융소득 및 자본소득 세제개편방안”, 2006년 조세개혁 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세무학회,
- 유시권. 1991. “비거주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유일호. 2006. “탈세와 세무행정”. 한국조세연구원.
- 윤계섭. 1990. “자본이득세제 도입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호.
- 윤중훈. 2002.7.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도입의 현실적 당위성”. 월간조세.
- 윤창현. 2004. “파생상품 과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특별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선물학회 등.
- 이상신. 2005.11. “기본파생상품과세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XI-2. 세경사.
- 이용섭. 2005. 「국제조세」. 세경사.
- 이용진. 1992. “우리나라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호.
- 재정경제부. 각연도. 「재정금융통계」.

- 전승훈. 2003.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전태영 · 변용환. 2005.11. “지하경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요인”, 세무학연구 제22권 제4호.
- 정재만 · 김재근. 2004. “개인투자자의 옵션매매의 성과와 현황”. 한국선물학회.
- 조세일보. 2006.2.15. “이슈 진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고소득층만 호호”
- 증권선물거래소. 2005. “2004년도 주식분포 상황조사”. KRX Review 2005년 4월호
- 최명근. 2002.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 허성관 · 홍순복. 1997.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주식매매에 미치는 효과”. 세무학연구 제9호.
- Jeffrey Owens. 2005.3. *Tax Reform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ECD.
- Marvin A. Chirelstein. 2005. *Federal Income Taxation(10th ed.)*. Foundation Press.

The Tax Reform Proposal for Financial Income and Capital Gain or Loss

Yoon Oh* · Hun Park** · Won Seok Choi***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s reviewed the current income taxation of Korea in terms of equity and detailed their review to the incom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or capital income). And they tried to find a way to improve them. Generally speaking the current income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depends on a single tax rate withholding scheme and allows lots of tax reductions and exemption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taxation is not perfect in terms of vertical equity as well as horizontal equity. The analysis of these problems more in detail rendered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threshold amount for global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is set so high as to hinder the vertical equity of income taxation. A single rate of 14% for withholding is applied the same to low income earners that they are not able to utilize the lowest rate of 8% in the basic income tax rate schedule. This also aggravates vertical inequity. Second, there are lots of reductions and exemptions in th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which hinders horizontal equity. Third, especially the current capital gains tax on securities and financial derivatives disturbs the integrity of income taxation.

Based on the findings in the above, the authors are proposing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the threshold amount for global taxation is recommended to be lowered below 20 million Won from current 40 million Won per person a year. A person with financial income less than the threshold amount should be allowed to elect a global taxation of his financial income. Comparative taxation comparing tax payable amount from global taxation with tax withheld, which sets the lower limit for the tax payable amount for global taxation, should be abolished. It will help simplification of tax procedures. Second, capital gains from securities should be taxed without exceptions. Capital loss from securities should be accordingly allowed to be setoff with capital gains. The limitation on that setoff should be unlifted as far as the government budget allows. Third, income from derivative transactions should also be under taxation. It will help to prevent proliferation of tax avoidance schemes utilizing derivative transactions. The above tax reforms might as well be undertaken incrementally, i.e., step by step. Firstly, each of the first, the second and the third proposal may be implemented separately. And then the tax law may introduce the concept of “financial income” which comprises every item of income or gains from financial assets for global taxation. Lastly, the reform has to be reevaluated with regard to its relations with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t this stage, the idea that the point of free transfer of wealth should be deemed as an event of income realization, which rationalizes the deemed capital gains taxation of the property transferr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feror, may be discussed.

<Key words> Financial Income, Capital Gain or Loss, Global Taxation, Securities, Financial Derivative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